

2007. 12. 20(목)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 조례 제명띠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의안번호 제2007-64호>

# 거창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12. 7.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12. 12.

### 2. 제안이유

2005년부터 법제처에서 실행되어 온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명칭에의 낫표(「 」)사용 등을 현재 우리 군은 자치법규가 제·개정될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가 많으므로 이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군 자치법규의 선진화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 조항을 둠(안 제2조).
  -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준용함
- 나. 인용 법령의 표시 등의 조항을 둠(안 제3조).
  - 본문 중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 」) 사용
  - 조직개편 이후 직제 및 과 등의 명칭 불부합 부분 정비
- 다. 유효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부칙).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 제22호 2007.4.16.)
- 「법령입안 심사기준」(법제처 2006년 12월)
- 「자치법규 입안실무」(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2007년 2월)
- 「국어기본법」(제정 2005.1.27. 법률 제7368호)
-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1988.1.19.)
- 「알기쉬운 자치법규 입안기준」(2007 경상남도 법무담당워크숍)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05년부터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거창군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제명 및 본문 중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1조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한다는 것이고,
  - 안 제2조는 거창군의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한다는 근거 규정이며,
  - 안 제3조는 거창군 조례의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이는 그 동안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함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으나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시행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국어기본법(제정 2005.01.27 (법률 7368호))

-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 법령입안 심사기준(법제처 2007)

- 제 3 편 법령의 체제 및 개정·폐지 방식

- 제 1 장 법령의 체제

- 1. 법령의 제명

- 가. 법령 제명의 결정원칙 및 표현방식

- 1)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

- 2) 법령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령제명의 간결성과 내용의 대표성 문제는 종종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시적, 특례적 사항을 정하는 법령은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간결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명이 길어지

는 경우에는 흔히 ‘등’자를 제목의 주된 내용의 표시 다음에 붙이는 경우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둘 정도인 때에는 주된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 3) 법령의 제명은 법령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의 제명과 같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과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법령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제명을 구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제 2 장 법령의 개정방식과 폐지방식

### 2. 일부개정방식

#### 3)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첫째, 법령의 명칭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둘째,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의 경우, 통상 일반인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알려져 있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셋째,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이라도 그 법령이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쓰도록 한다.

넷째,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한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법령 명칭에 포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의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도 하나의 명사의 성격을 갖고, 명칭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과 달리 “시행령”, “시행규칙”은 띄어 쓴다.

여섯 번째,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 법령안의 띄어쓰기의 기준은 띄어 쓰기를 한 해당 법령의 제명 다음에 한 칸 띄운 후 “전부개정법률안” 또는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붙여 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 입안방법

(국회사무처예규 제19호,제20호 2006.3.1.시행)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

### 6. 법문 표현의 표준화에 관한 기준

#### (2)법문의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 표준

##### (가) 법률제명의 띄어쓰기

##### 1) 법률제명은 띄어 쓴다.

가)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없는 경우 의존명사 뒤에서도 띄어 쓴다)에서 띄어 쓴다.

나)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률제명은 8음절까지 붙여 쓴다. 다만, 조직·기구·단체·기금·특별회계 등 특정한 복합명사가 하나의 실체를 갖는 명칭인 경우에는 8음절 이상인 경우라도 붙여 쓴다.

다)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률제명이 8음절 이상인 경우 의미상 조사 등이 들어갈 부분에서 띄어 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첫 8음절까지는 붙여 쓴다.

##### 2) 법문 중에 법률제명을 기재하는 경우 구분 표시

가) 법률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의 뒤에 낫표(「」)를 붙인다.

※ 다만, 법령집에서의 법령 제목,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서는 낫표(「」)를 사용하지 아니함

## □ 알기쉬운 자치법규 입안기준

(경상남도 법무업무 담당공무원 합동워크숍 교재 2007.11.8.)

### 4. 법령문 띄어쓰기

#### 가. 제명 띄어쓰기

○ 자치법규 제명은 원칙적으로 단어별로 띄어쓰되, 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쓴다.

○ 다만,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단체, 기금, 위원회 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붙여 쓰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는 띄어 쓴다.

-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조례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
-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조례
- “시행규칙”은 앞의 조례명과 띄어 쓴다.
-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시행규칙